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의안 번호	1424
----------	------

제출연월일 : 2024. 7. .
제 출 자 : 대통령

주 문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대법관(노경필)의 임명에 동의한다.

제안이유

대법관(3인)의 임기가 만료(2024. 8. 1.)됨에 따라 헌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임.

임명동의대상자

- 성 명 : 노 경 필(魯 炯 泌)
- 생년월일 : 1964년 10월 1일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웰빙타운로 xx, xxxx동 xxxx호
(이의동, xxxxxx)

※ 불 입

-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1부.
-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1부.
- 공직후보자 병역신고사항 1부.
-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1부.
- 최근 5년간 국세·지방세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사항 1부.
-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1부.

대법관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1. 임명동의 요청대상자

성명 : 노 경 필 (魯 垌 泌)

생년월일 : 1964. 10. 1.

2. 임명동의 요청사유

-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7년 2월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출중한 법률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헌신해 온 정통 법관임.
-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충실한 기록 검토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당사자들과 내실 있게 소통하면서 밀도 있는 재판을 진행하고, 읽기 쉬운 간결한 문체로 판결문을 작성하여 재판 참여자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등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힘써 왔음.
-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공법 분야의 법률지식이 탁월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과 행정법 분야의 중요 사건들을 심도 있게 연구·검토하였고 주요 고등법원에서 행정재판부를 오래 맡아 누구나 수궁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법치행정과 조세정의 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음.

-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 시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의 비정규직 강사가 정규직 강사와 비교해 주된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상여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문제된 사건에서 「기간제 및 단기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의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면서, 자동차운전면허학원에서 정규직 운전강사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등을 기간제 운전강사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으로써 노동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고 법의 제정목적과 입법취지를 충실히 구현하였음.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시 개인사업자인 건설기계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언제까지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된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기존 실무례에 따라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1심과 달리, 종사한 업무의 형태와 근로자 직종별 연령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 등을 면밀히 심리한 끝에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상향하여 인정함으로써 평균수명의 증가 등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안목으로 시대의 변화를 판결에 담아내는 통찰력을 보여주었음.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하면서 판례로 정립되었음.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시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사람의 부모를 살해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에서 추가기소된 강도음모 등의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절차 위반의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고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힌 것을 존중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으로 환송함으로써 형사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한편,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는 법원의 잘못으로 다시 재판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함으로써 유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균형 있는 자세를 보였음.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시 정신장애인이 경기도 화성시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서 차별 때문에 탈락했다며 화성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응시자에 대한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이 직무와 관련 없는 응시자의 장애와 관련한 질문을 하는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질문을 통한 면접위원의 평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화성시에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경각심을 높여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데 기여하였음.
-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공법 분야에서 법원을 대표하는 전문가로서 행정행위와 행정소송 등에 관한 다수의 연구논문을 집필하고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이론과 실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실무제요 행정편 개정작업에 참여하여 공동 집필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소송 실무의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음.
-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2021년부터 2년간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소탈한 성품과 인간적인 면모를 바탕으로 소속 법관 및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소속 법관 및 직원들이 재판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사법행정에서도 리더십을 인정받았으며, 법원 내부뿐 아니라 재야 법조계에서도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음.
-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해박한 법률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높은 전문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사명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은 의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소신 등 대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두루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경륜과 소탈한 성품, 격의 없는 소통능력과 진정성 있는 리더십,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까지 겸비하고 있어 대법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되므로,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관으로의 임명동의를 요청합니다.

직업 · 학력 · 경력에 관한 사항

- 이 력 서
- 재직증명서
- 졸업증명서
- 합격증명서
- 경력증명서

이 력 서

성 명 : 노 경 필 (魯 垌 泌)

생년월일 : 1964. 10. 1.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웰빙타운로 xx, xxxx동 xxxx호(이의동, xxxxxx)

직 업

2023. 2. ~ 현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학 력

1980. 3. ~ 1983. 2. 광주고등학교 졸업

1983. 3. ~ 1987.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법학사)

1987. 3. ~ 1989.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경 력

1991. 10.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7. 2. ~ 1999. 2.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9. 3. ~ 200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2001. 2. ~ 2004.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2003. 8. ~ 2004. 8. 국외교육훈련 파견(스위스 바젤대학)
2004. 8. ~ 2005. 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사
2005. 2. ~ 2006. 2.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6. 2. ~ 2009. 2.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2009. 2. ~ 2011. 2. 대법원 재판연구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1. 2. ~ 2016. 2.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2016. 2. ~ 2019. 2.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2019. 2. ~ 2019. 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9. 3. ~ 2021. 2.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2021. 2. ~ 2023. 2.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23. 2. ~ 현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병 역

1994. 5. ~ 1997. 2. 육군 대위(원에 의한 전역)

상 훈

○ 해당사항 없음

공직후보자 병역신고사항

- 공직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 병적증명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
- 공직후보자 재산공개확인서
-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관보)
- 공직후보자 재산변동사항신고서

최근 5년간 국세·지방세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사항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납세(체납)증명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 범죄경력조회서

재산관련 부속서류